

알기 쉬운! 서울시 복지시설 공익제보 매뉴얼





Contents

I. 서울시 공익제보란?	04
1. 공익제보의 정의	05
2. 공익신고	06
3. 부패행위신고	08
4.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신고	10
5. 복지시설 공익제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사례	11
II. 공익제보의 접수 및 처리 절차	14
1. 공익제보의 처리 흐름도	15
2. 공익제보의 접수	16
3. 제보내용의 확인 및 처리	17
III.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	24
1.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25
2. 서울시 공익제보 보상·포상·구조금 지급 제도	31
IV. 유형별 공익제보 대상 행위	38
1. 공익신고 대상	39
2. 부패행위신고 대상	40
3.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신고 대상	41

서울시 공익제보 쉽게 이해하기



서울시 공익제보 이곳에 하세요

홈페이지/모바일:

서울시 응답소 → 부패신고 OR 공익신고 클릭
(<http://eungdapso.seoul.go.kr>)



우편:

서울시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5동 2층) (우: 04515)

FAX: 02-2133-1309



서울시 공익제보란?



01 공익제보의 정의

02 공익신고

03 부패행위신고

04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신고

05 복지시설 공익제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사례

01 공익제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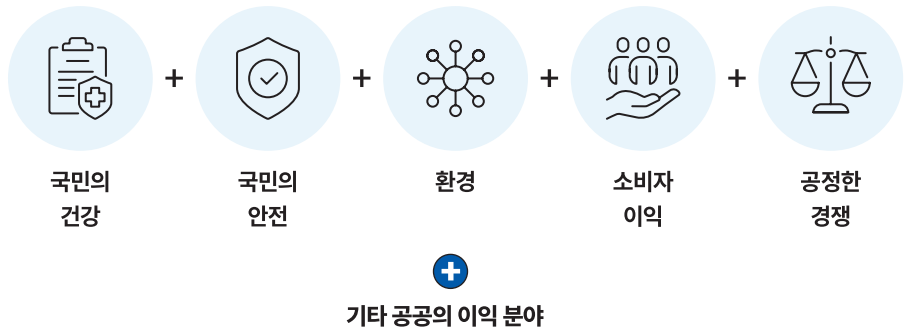


서울시 공익제보란?

서울시 소관 사무 관련 공익신고, 부패행위신고 및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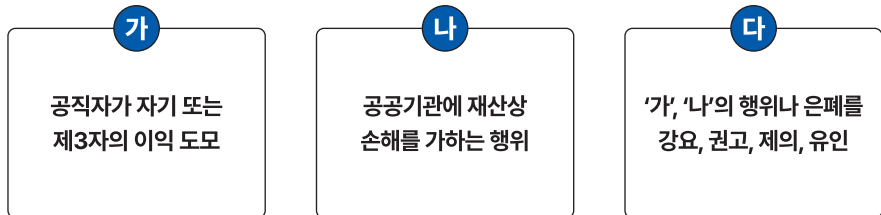
공익신고

6개 분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495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부패행위 신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각 목(가, 나, 다)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 위반신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공직 풍토를 해칠 수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6개 분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495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공익침해행위’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공익침해행위란 3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신고, 진정, 고소, 고발, 제보, 단서 제공을 의미합니다.

[공익신고의 형태]

신고 형태	세부 내용
1 신고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대해 감독권,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기 위해 서면을 제출하는 행위
2 진정	사정 진술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3 고소	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 표시하는 행위
4 고발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5 제보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수사의 단서 제공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신고, 진정, 고소, 고발, 제보, 단서 제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거나, 허위나 부정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6개 분야의 공익과 관련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의 495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 분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학교급식법
- 의료법, 약사법
- 식품위생법



소비자 이익 분야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소비자기본법
- 금융이용자 보호 법률



안전 분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건설기술관리법
- 건축사법
- 해사안전법



공정한 경쟁 분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 법률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환경 분야

- 폐기물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 악취방지법
- 물환경보전법



기타 이익 분야

- 채용절차법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사회복지사업법

[공익신고 관련 용어 및 개념]

용어	세부 내용
공익신고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내부자, 소비자, 외국인 등)
공익신고등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제3자의 진술·자료 제공 등 협조행위
공익신고자등	공익신고자 + 신고 관련 협조행위를 한 사람으로 모두 보호 대상
외부공익 신고	조직 외 사람이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하는 행위
내부공익 신고	기업 및 조직 구성원이 내부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행위 [내부공익 신고자의 범위] ① 근무관계 : 소속 근로자 외 다양한 형태의 근무관계에 있는 자 ② 계약관계 : 납품업체 및 하도급 업체 직원과 같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사실상 영향력 관계 : 계열회사나 산하단체 직원 등 피신고자의 영향력 관계에 있는 자 ④ 지도 또는 관리 감독 관계 : 학생 등 사실상 지도, 관리 감독 관계에 있는 자

03 부패행위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공익신고

부패행위의 판단 기준은 총 3가지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나’, ‘다’ 항목입니다.

먼저 ‘가’ 항목입니다.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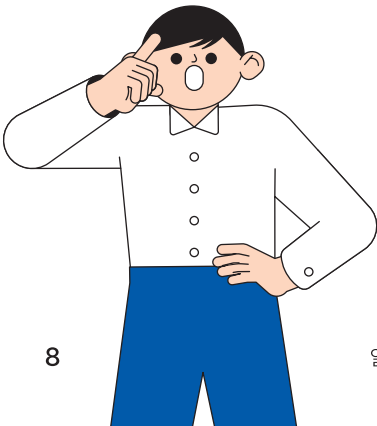
④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① 공직자	1)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장 및 그 직원 2)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부패행위 신고 한정)
② 직무와 관련	1)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 2)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
③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	1)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 2) 외관상 직무권한과 관련이 없어도 지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목적을 달성
④ 법령을 위반	1)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위반 2)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제반 법령 위반 3) 형법에서 규정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뇌물죄 등 위반 4) 공무원 직무상 의무(법령준수, 복종, 직무전념, 친절·공정, 비밀 준수, 품위유지 및 청렴)를 위반
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	1) 재산, 비재산(객관적 측정 가능), 유형·무형의 일체의 이익을 포함 2) 반사적 이익은 제외



여기서 참관!

부패행위는 형사 범죄의 구성요건과는 다르므로
형사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부패행위 징계 등
처벌이 가능해요!

03 부패행위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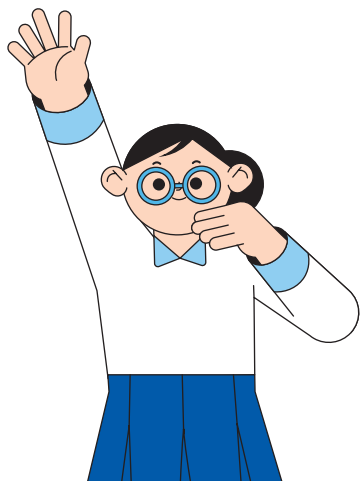
‘나’와 ‘다’ 항목입니다.

①	②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③	④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① 공공기관	1) 각급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3)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4)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5) 각급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②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계약의 체결·이행	1)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사인 또는 사기업의 부패행위 포함 2)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매매·관리하는 사인 또는 사기업의 공공재산 침해행위 3) 공직자와 공모 또는 담합 또는 공직자를 기망
④ 법령위반	1) 재량권남용(법령위반에 제외되지만, 부패행위의 경우에는 포함)
⑤ 재산상 손해	1) 재산상 손해 발생 2) 사후에 손해의 회복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부패행위 성립 3) 단, 재산상 손해의 발생가능성만으로는 부족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와 ‘공적재산 침해에 해당하는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간접적인 부패행위



! 여기서 참관!

부패행위자가 부패행위 당시에는 공직자의 신분이었으나,
신고 당시에는 공직자의 신분을 떠난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포함돼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공직 풍토를 해칠 수 있는 행위가 대상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
-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 퇴직자 사전접촉 신고 등



부당이득 수수금지 위반

- 이권개입 금지
- 직위 사적 이용 금지
- 알선, 청탁 등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

-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05

복지시설 공익제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사례

[사례 1] 사회복지사업법 회계부정

제보내용

법인시설 불법 증축, 이익 개인 계좌 유용

□□복지재단 대표가 법인 시설을 불법적으로 증축하여
레저스포츠, 숙박시설 등으로 개조하였고, 이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을 대표 개인 계좌로 유용함



<해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 ① 사·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사·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처리결과

수익금 환수, 대표이사 해임 처분

포상금
600만 원

조사 결과

사회복지 사업 외의 숙박시설 운영 등 불법행위 확인

선정기준

- 1-1.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1-2. 금전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2. 사회복지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
→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액 확정

[사례 2]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부정수급

제보내용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서 인건비 지급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협회에서 실제로 출근하지
않는 직원 A씨에게 인건비를 지급



<해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 ① 사·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사·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처리결과

보조금 환수, 벌금 100만 원 부과, 대표 해임처분

포상금
300만 원

조사 결과

□□협회가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대표의 가족 계좌로 일부 빼돌리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확인

선정기준

- 1-1.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1-2. 금전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2. 사회복지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
→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액 확정

05

복지시설 공익제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사례

[사례 3]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포상금
150만 원

제보내용

직원 허위 등록 등 부풀린 보조금을 개인용으로 사용

센터장이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강사비를 본인 계좌로 돌려받거나, 이용자 수를 조작하여 부풀린 급식비 등을 개인용으로 사용함



<해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처리결과

보조금 환수, 벌금 500만 원 처분 및 센터장 교체

조사 결과

프로그램비·강사비 등의 보조금 사용내역을 부풀리고 허위로 보고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해 온 사실 적발

선정기준

- 1-1.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 1-2. 금전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2. 사회복지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
-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액 확정

[사례 4] 사회복지시설 미허가 임의사용

포상금
120만 원

제보내용

시설 건물 일부를 개인 영리목적으로 임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가 기본재산의 일부 건물을 감독기관 허가 없이 개인 영리목적으로 임대함



<해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 ②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처리결과

벌금 400만 원 처분

조사 결과

현장 적발로 건축물의 무상 임대 등 확인

선정기준

- 1-1.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 1-2. 금전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2. 사회복지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
-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액 확정

9가지 주요 신고대상

인력, 이용자 관련

종사자허위등록, 무자격자채용, 보조금 허위청구·횡령, 입소·이용자 허위등록

회계/재정 및 행정 관련

회계부정, 부적정 사용,페이백, 서류조작, 각종 비리사실

Q

몇 년 전 발생한 위법행위도 공익신고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익신고는 기간에 제한이 없어 오래된 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법률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 및 과태료 부과 기한이 지난 경우 등은 종결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Q

부정목적 신고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A

신고를 빌미로 돈이나 승진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신고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상을 위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정목적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례별로 명확한 증거와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원이 단체교섭 결렬 후 공익신고를 하였거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목적 신고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신고의 동기에 따라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A

공익신고자는 신고의 동기에 상관없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 등은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와 제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Q

공익신고를 받는 공공단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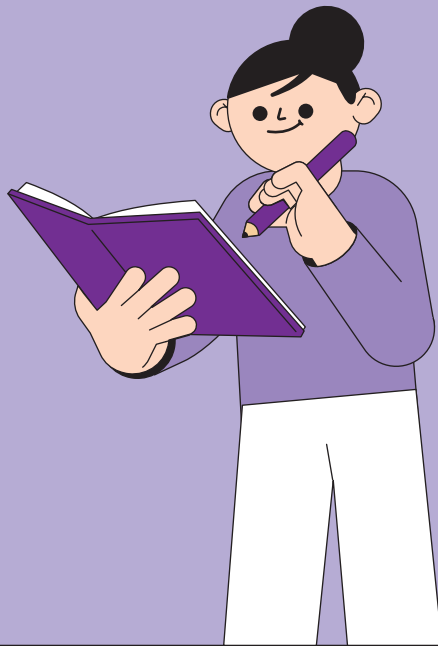
A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나 그 위임에 따라 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공공단체가 해당됩니다.

또한, 공공단체 직원이 소속기관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공공단체도 임시로 공익신고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1호)



공익제보의 접수 및 처리 절차



01 공익제보의 처리 흐름도

02 공익제보의 접수

03 제보내용의 확인

01 공익제보의 처리 흐름도

Step 01. 신고서 제출

- ①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 ② 위법행위를 하는 자
- ③ 공익제보 내용
- ④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Step 02. 접수

- ①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내용 등 확인
 - ② 공익제보 접수
 - ③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 ④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 공익제보가 아닐 경우 일반민원 으로 접수

Step 03.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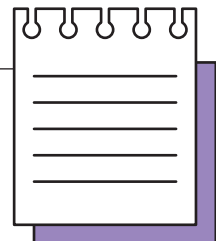
- ① 공익제보 대상 여부 확인
- ② 제보 진위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및 분석

Step 04. 처리

- ①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
 - ②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 ③ 제보자에게 결과 통보
- 관할이 아닌 공익제보는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
제보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는 조사 불개시 또는 중단

Step 05. 사후관리

- ① 법령에 따른 제보자 보호
 - ② 공익제보 보상·포상·구조금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
- ※ 보호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신청 안내



공익제보의 접수

신고서 제출

접수

확인

처리

사후관리

공익제보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누구든지 신고서와 공익제보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

신고서 기재사항*

제 4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공익 제보서

제출 일자 :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연락처
제출자 연락처	주소 		
제출자 직속 상사	직위 직급 		
제출자 직속 부서	부서 		
제출자 직속 과	과 		
제출자 직속 팀	팀 		
제출자 직속 과장	과장 		
제출자 직속 팀장	팀장 		
제출자 직속 대리	대리 		
제출자 직속 조	조 		
제출자 직속 과장	과장 		
제출자 직속 팀장	팀장 		
제출자 직속 대리	대리 		
제출자 직속 조	조 		
제출자 직속 과장	과장 		
제출자 직속 팀장	팀장 		
제출자 직속 대리	대리 		
제출자 직속 조	조 		
제출자 직속 과장	과장 		
제출자 직속 팀장	팀장 		
제출자 직속 대리	대리 		
제출자 직속 조	조 		
제출자 직속 과장	과장 		
제출자 직속 팀장	팀장 		
제출자 직속 대리	대리 		
제출자 직속 조	조 		
제출자 직속 과장	과장 		
제출자 직속 팀장	팀장 		
제출자 직속 대리	대리 		
제출자 직속 조	조 		
제출자 직속 과장	과장 		
제출자 직속 팀장	팀장 		
제출자 직속 대리	대리 		
제출자 직속 조	조 		
제출자 직속 과장	과장 		
제출자 직속 팀장	팀장 		
제출자 직속 대리	대리 		
제출자 직속 조	조 		
제출자 직속 과장	과장 		
제출자 직속 팀장	팀장 		
제출자 직속 대리	대리 		
제출자 직속 조	조 		
제출자 직속 과장	과장 		
제출자 직속 팀장	팀장 		
제출자 직속 대리	대리 		
제출자 직속 조	조 		
제출자 직속 과장	과장 		
제출자 직속 팀장	팀장 		
제출자 직속 대리	대리 		
제출자 직속 조	조 		
제출자 직속 과장	과장 		
제출자 직속 팀장	팀장 		
제출자 직속 대리	대리 		
제출자 직속 조	조 		
제출자 직속 과장	과장 		
제출자 직속 팀장	팀장 		
제출자 직속 대리	대리 		
제출자 직속 조	조 		
제출자 직속 과장	과장 		
제출자 직속 팀장	팀장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1. 제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위반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신고방법



홈페이지/모바일

서울시 응답소 → 부패신고 OR 공익신고 클릭
(<https://eungdapso.seoul.go.kr>)



우편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5동 2층
감사위원회[공익제보센터] (우 : 04515)



FAX

02-2133-1309

참고사항 | 공익제보 요건

1. 공익 제보에 해당하거나 신고자 인적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2. 증거자료가 없거나 신고내용, 대상 등이 불분명하면 보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야만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전화

02-2133-4800

03 제보내용의 확인 및 처리

Step 01. 신고서 제출

Step 02. 접수

Step 03. 확인

Step 04. 처리

Step 05. 사후관리

공익제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보 내용을 접수하고 주요 사안들을 확인합니다.

형식적 요건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증거 등을 확인합니다.
일부 누락되었을 경우에 보완요구를 할 수 있고,
타기관에서 진행 중인 내용이면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요건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 혹은 부패행위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공익신고 6대 분야 495개 법률 위반이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인지
확인합니다.

신분공개 동의 여부

공익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조사기관에서는 공익제보의 처리 과정에서
공익제보자의 신분 공개 여부를 확인하여
적시합니다.

참고사항 | 7가지 제보 확인 사안

1. 제보자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직업 · 근무처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제보의 경위 · 취지 및 이유
3. 공익제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공익제보자와 피신고자 또는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공익제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6. 공익제보를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제보를 하였는지 여부
7. 공익제보자가 조사기관의 확인 및 조사 · 수사 과정 등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03 제보내용의 확인 및 처리

Step 01.
신고서 제출

Step 02.
접수

Step 03.
확인

Step 04.
처리

Step 05.
사후관리

공익제보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건을 배분하고 6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01. 사건분배

	부패 신고	공익 신고
시공무원	조사담당관 직접 조사	시 소관부서
구공무원	자치구 감사담당관	자치구 감사담당관 → 소관부서
투출, 위탁보조금 등 기관 관련	시 소관부서 또는 소관기관 감사부서 중대사안은 조사담당관 직접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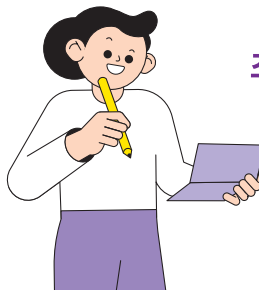
02. 조사통보

응답소시스템
자동통보

처리자 확정시 자동 알림

※ 처리기간 공지
(근무일 기준 60일 산정 날짜 통보)

03. 결과



조사기간 60일 이내 (연장 가능)

03 제보내용의 확인 및 처리

Step 01. 신고서 제출

Step 02. 접수

Step 03. 확인

Step 04. 처리

Step 05. 사후관리

공익제보에 해당하면 제보자는 보호를 받나요?

민원유형에 관계없이 제보자를 보호합니다.

안심하세요!!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동의 없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짐작할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됩니다.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금지

**그래도 불안하다면,
변호사가 대리로 신고해드려요!**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대리 신고제 운영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합니다.

10명의 변호사 위촉

+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수당 지급
(소송비용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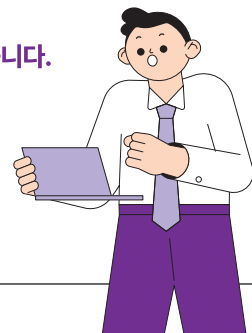
+

불이익 등에 대한
구조금 지급

✉ **안심변호사는 이메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응답소 공익제보 창구 → 안심변호사 안내

* 이후 변호사 판단에 따라 유선 또는 대면상담 등 가능



❶ 서울시 공익제보란?

❷ 공익제보의 접수 및 처리 절차

❸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

❹ 유형별 공익제보 대상 행위

서울시 공익제보 제도 ①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대리 신고제 운영



서울시와 함께하는 10명의 변호사가 부정·부패를 대신 신고해드립니다.

일반민원 및 시 소관 사무가 아닌 경우는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제1호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 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세요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상세정보 (2025년 7월 7일 기준, 가나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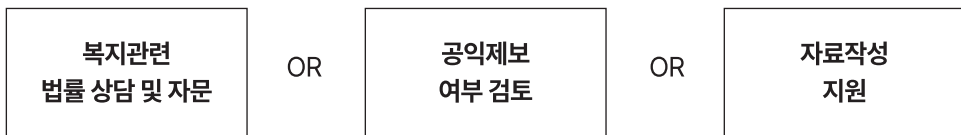
성명	현 소속	이메일	주요 경력
1 김희경	법인법인 도영	mediatorkim@gmail.com	서울YMCA 시민중계실 위원
2 박종유	변호사 박종유 법률사무소	lawsolver@naver.com	서울경찰청 집회·시위 자문위원
3 이상대	변호사 이상대 법률사무소	xingd1@nate.com	(前)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운영위원
4 이상영	법무법인 YK	psalms@yklaw.net	(前)서울시 감사담당관 심의팀장
5 이용혁	법무법인 금성	foruyhlee@gmail.com	(前)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6 정남순	법무법인 경연	jns793@gmail.com	환경부 고문변호사
7 정덕연	은하수 합동법률사무소	jdypopo@naver.com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인재특별위원
8 최명섭	국선전담변호사	cuco21@daum.net	인천광역시 인권위원장
9 한철희	법률사무소 EDM	ch@edmlaw.kr	ESG 정책연구소 대표이사
10 황성현	법률사무소 로마	pan23@hanmail.net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시 공익제보 제도 ②

공익제보자 사전 지원 Consulting

공익신고 및 법정 절차 진행 전, 공익제보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공익제보 사전컨설팅'



※ 반드시 필요한 사전절차는 아니며 공익제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



공익법센터 포털에 접속해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https://swlc.welfare.seoul.kr/>)

신고자가 참고할 사전 Check List 및 관련법령 규정을 알려드려요.

제보자 Check List	
공익제보의 범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신고 ☐
공익제보 요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 ☐
	신고대상 인적사항을 밝히셨습니까? 신고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신고내용과 신고자유의 무엇인가요? 증거는 확보하고 계십니까?
공익신고 기법	감사, 조서, 심판 등 행정 수사절차 진행여부 ☐
	실질적 요건 공익침해행위 등 여부
신고의 절차 (서울시의 경 우)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이름 등이 대표자 또는 사용자 ☐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구제 또는 조사 등의 권원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신고의 절차 (서울시의 경 우)	3. 수사기관 ☐ 4. 감사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 5. 시민(국민위원회) ☐
	6. 공익침해행위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상한 공익기관 등의 공익단체 ☐
신고의 절차 (서울시의 경 우)	신고서 신고서 기재 사항 ☐
	구술신고(특정된 사항 존재 시) ☐
신고의 절차 (서울시의 경 우)	문자: 「윤집소」 홈페이지 공익제보포장구 (https://eungdapo.seoul.go.kr) ☐
	오류/미흡한 공익제보지원센터 방문 ☐
신고의 절차 (서울시의 경 우)	실명신고 ☐
	익명신고 ☐
신고의 절차 (서울시의 경 우)	조서결과 통보 (서울소>제보자)
	자기관리 통보 (연호소>제보자)

공익신고	
신고 대상 행위 범위 (복수 선택 가능)	•국인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예: 부정, 불법식품 제조·유통 등) ☐
	•국인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예: 선반안전장치 미설치 등) ☐
신고 대상 행위 범위 (복수 선택 가능)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예: 환경영향 평가 미 실시 등) ☐
	•소비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예: 불량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신고 대상 행위 범위 (복수 선택 가능)	•공정경쟁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예: 가격 담합 등) ☐
	•사회복지와 관련한 법률 위반행위, 기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준하는 공 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신고 대상 행위 범위 (복수 선택 가능)	• 사회보장관련법 위반행위 ☐ / 공공부조관련법 위반행위 ☐ / 사회서비스관련법 위반행위 ☐ 기타 ☐
	•부정직, 불공정한 직무수행 / 민원에 대한 불응/ 공직자로서 품위 훼손행위 ☐
신고 대상 행위 범위 (복수 선택 가능)	•부당이익의 수수, 공직/직위의 사익 이용 금지/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일단 행위/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선선 직위관련 행사/ 지위 등에 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 아닌 자에게 재물 등 불이익 제공 행위 ☐
	•직무상 비밀정보의 유출, 직무수행에 관한 정보의 누설 또는 누설 등 하는 행위 / 직권 또는 지위를 가진 사실상 영향력으로 직무관련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익 또는 재물 등 을 하는 행위 ☐
신고 대상 행위 범위 (복수 선택 가능)	•직무관련 등을 행사하여 직무수행에 부당한 지시 등의 부당 행위 ☐
	•아래 어느 누구로부터 공문 수수·교류·차탈하는 행위(예외 있음) ☐
신고 대상 행위 범위 (복수 선택 가능)	•감독·관리 책임자에게 보고·제출·제출할 공문 및 물품의 지위 등의 요구행위 ☐
	•공직자 관련 법령의 통치에 관하여 정호조치와 사법권 수수행위 ☐
신고 대상 행위 범위 (복수 선택 가능)	•정호조치 통치행위(제외 있음) ☐
	•기타 서울시장유관행동규정에 명시된 행위 ☐
공익제보의 처리 절차 및 처리 결과	•공직자가 직무를 관할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
	•공직자를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 ☐
공익제보의 처리 절차 및 처리 결과	•공직자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위 행위나 그 손해를 감고, 견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익제보의 처리 절차 및 처리 결과	•기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에 명시된 행위 ☐

Q&A

공익신고의 접수

Q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하여 공익신고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구술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사람이 내용을 대신 작성한 후에 신고자에게 돌려주고 신고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Q

반드시 신고서 양식대로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꼭 정해진 양식을 쓰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규정한 신고서 서식에 따라 접수하고 있지만, 다른 공익신고 기관의 경우 ①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②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③공익침해행위의 내용, ④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의 구술신고를 제외한 단순 전화문의 및 상담은 공익신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공익신고를 할 때, 신분공개에 동의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꼭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분 공개 여부에 대해 분명히 의사를 밝혀야 하며 비공개로 요청이 가능합니다.

Q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확신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익침해행위가 명확하지 않아도 신고하면 접수기관에서 내용 확인 후 판단하여 처리됩니다. 단, 신고내용이 공무원의 불친절 및 제도개선 등의 단순 건의사항은 일반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익명으로 신고 시, 공익신고로 인정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기명신고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보호와 보상을 원한다면 반드시 이름을 밝히고 신고해야 합니다.

Q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대신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 명의로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Q

전화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전화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화로 신고 시, 문서로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며 서면 제출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술 신고로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증거자료 제출 없이 구체적인 기술만으로 조사가 가능한가요?

A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접수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증거가 없는 경우 신고가 종결 될 수 있습니다. 단,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조사·수사기관에 넘기거나 공동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

공익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정당한 신고는 거부될 수 없지만, 허위신고나 부정목적의 신고인 경우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접수한 공익신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조사기관은 신고내용 및 법률 확인 후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수사기관은 해당 사안이 관할 및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확인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하고, 종결 후에는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Q

접수된 공익신고는 모두 조사 대상이 되나요?

A

아니요,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이거나 법 규정상 조사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자에게 조사되지 않은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Q

신고서 기재사항이나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조사가 진행되나요?

A

아니요,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내용 등이 누락된 경우 바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며, 보완 요청을 받게 됩니다. 기관이 2회 이상 보완 요구를 했는데도 기간 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 조사가 되지 않거나 중단하고 종료될 수 있습니다.

Q

공익신고자나 협조자가 인적사항 생략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 협조자나 가족 및 동거인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사·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익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문서에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별도로 신원관리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



01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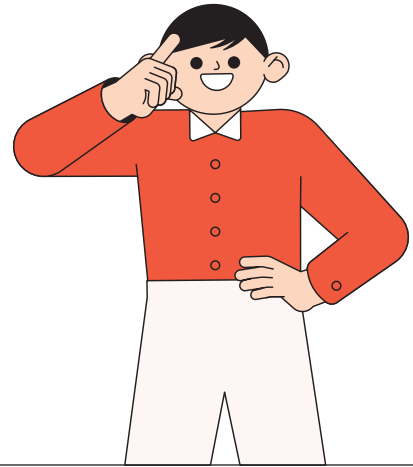
02 서울시 공익제보 보상·포상·구조금 지급 제도

01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공익제보자를 보호

- ✓ 공익제보자의 **신변 비밀**을 보장합니다.
- ✓ 공익제보자의 **책임**을 감면합니다.
- ✓ 공익제보자의 **불이익조치** 금지합니다.
- ✓ 국민권익위는 공익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 ✓ 국민권익위는 공익제보자를 **보호조치** 합니다.



[공익제보 신고자 보호지원 조례 및 법률]

구분	세부 내용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비밀보장, 개인정보 노출금지,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 금지)	관련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 누설 시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국민권익위)	제13조(신변보호의조치)	신변보호 요구 시 필요하다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신고 관련하여 신고자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원상회복 조치- 차별지급 또는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법률은 신고자 보호관련 강제적 조치 권한을 국민권익위에만 부여하고 있음

비밀보장

책임의 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보호조치

비밀보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보호수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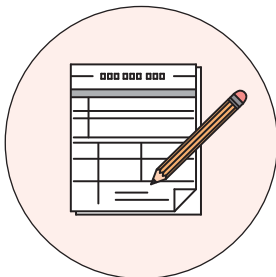
공익제보자가 밝혀지지 않으면 불이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제보자 등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됩니다.

**공익제보대상 기관은**

공익제보의 접수·처리 등의 과정에서 공익제보자 등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조사기관 담당자는**

제보 사건을 처리하거나 이첩·이송, 자료제출 요구 과정에서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담긴 **제보내용**이 노출되거나 알려지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인적사항 공개·보도 등의 금지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1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비밀보장

책임의 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보호조치

상급자나 대표자의 지시 또는 경제적 이익 보장으로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하였으나
스스로 시정하고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① 공익신고로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라도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를 징계 혹은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의 감경이나 면제 등을 요구합니다.
- ②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나 공익신고 금지 등의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 ③ 공익신고로 피신고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라도
허위 신고가 아닌 이상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왜 공익제보자들은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책임을 감면해주는 걸까요?

첫째, 공익신고자 등이 **상급자 지시** 등으로 부득이하게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한 것일 수도 있고,
둘째, 자진신고 유도를 통한 **공익침해행위 시정**을 위해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거랍니다.

❶ 서울시 공익제보란?

❷ 공익제보의 접수 및 처리 절차

❸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

❹ 유형별 공익제보 대상 행위

비밀보장

책임의 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보호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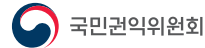
누구든지 공익·부패행위 신고자와 협조자 등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줄 수 없습니다.



불이익 조치 유형	불이익조치 시 형사처벌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벌칙조항 없음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01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비밀보장

책임의 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보호조치

공익신고자와 주변 사람들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② 공익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은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변보호조치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 ③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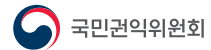
Ⅰ 서울시 공익제보란?

Ⅱ 공익제보의 접수 및 처리 절차

Ⅲ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

Ⅳ 유형별 공익제보 대상 행위

01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비밀보장

책임의 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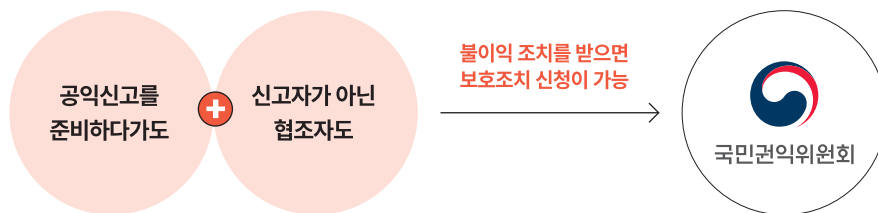
신변보호

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등이 진술, 증언, 자료 제공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공익신고 후가 아닌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이후 공익신고를 하였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2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신청기간이 지나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3 다만,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 **소멸한 날부터 14일, 국외에서의 보호조치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서울시 공익제보 보상·포상·구조금 지급 제도



공익제보자에게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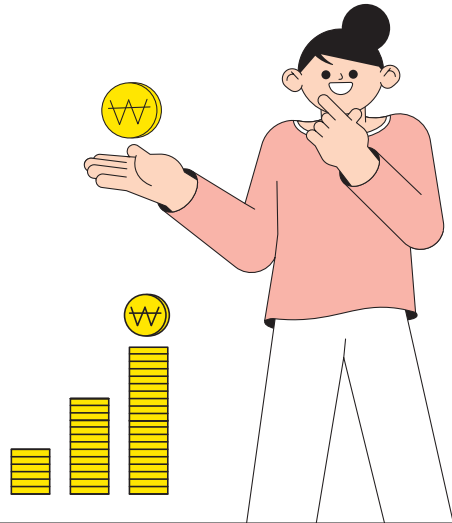
서울시의 재정수입에 기여하였으므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더 큰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였으므로
공익 증진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포상금·구조금 비교표]

구분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지급요건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및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 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
법적근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7조
상·하한액	상한액 없음 20만원 이하는 지급 無	2억원 이내	없음
지급절차	제보자 신청 → 위원회 심의 결정	처리기관에서 추천 → 위원회 심의 결정	피해 비용 입증/신청 → 위원회 심의 결정 *긴급 시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우선 지급



여기서 참관!

단, 중복 지급은 되지 않아요!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공익제보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회복에 대해 보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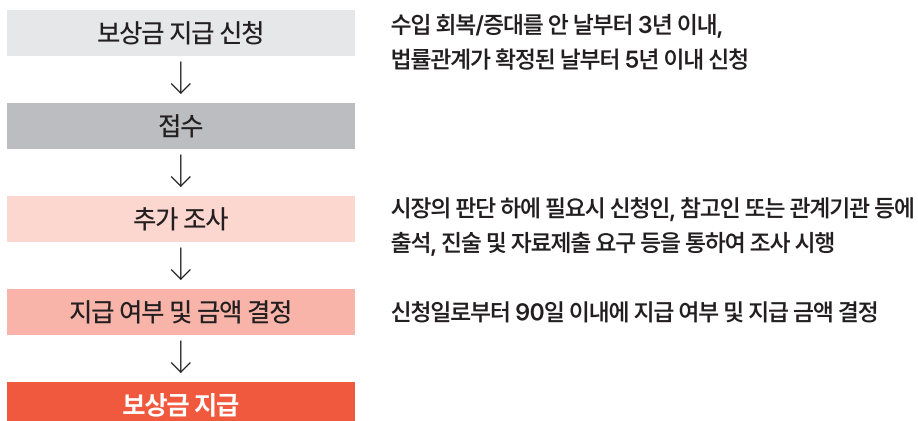
단, 공익신고는 내부공익신고자만 신청이 가능해요!

[보상금 지급 기준]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

- ❶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❷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 포함)
- 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 지방세의 부과
 -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지급 절차]



수입회복/증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며** 상한액은 없습니다.
단, 20만원 이하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더 큰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는 공익 증진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과 달리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선정해요.

[보상금 지급 기준]

공익침해행위자/부패행위자가 징역형을 받거나, 부실시공의 보강공사 등이 이루어질 때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자가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선고
-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개정 등 제도개선 기여
-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부패신고

- 부패행위자에게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징계처분 등 선고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신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지급 절차]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서울시 공익제보를 처리 하는 기관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

위원회 심의·의결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대상자 선정 및 추천 대상자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급

보상금 지급

포상금은 2억원 이내로 지급합니다.

단,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을 추가하거나 달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공익제보로 인한 치료비용 등 피해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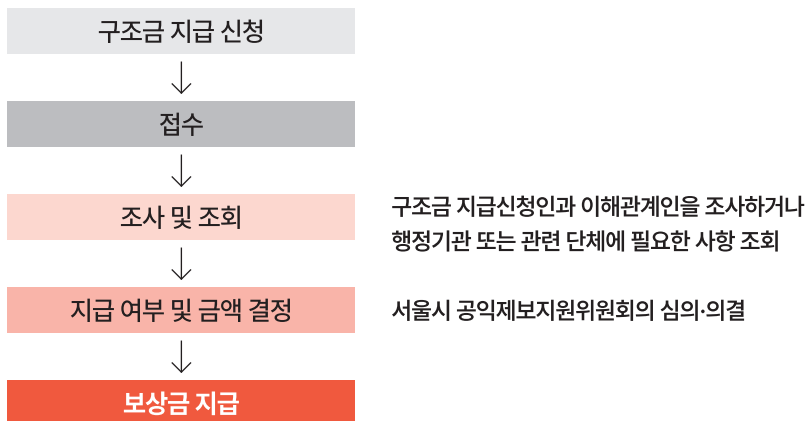
지출한 비용 및 경제적 손실 등으로 제보자가 받은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급합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

아래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구조금 지급 신청 가능

- 1)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 2)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입료
-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에 해당하는 임금 손실액.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지급 절차]



Q&A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Q

담당자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노출한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피신고자가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한 경우에도 비밀보장 의무 규정 위반에 해당하나요?

A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고자가 정황상으로만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한 경우에는 비밀보장 의무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

공익신고자나 협조자의 인적사항 외에 신고내용 등은 공개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의 공개는 철저히 금지됩니다.

Q

본인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네,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비밀보장, 신분보호, 원상회복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한 범죄행위, 위법행위에 대해 형,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업의 비밀도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A

네, 기업의 비밀이라도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Q&A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Q

공익신고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업이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더라도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허위신고이거나 금품이나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는 등의 부정목적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공익신고자는 아니지만 공익신고나 보호조치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협조하다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아닌 협조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계약 종료 및 갱신이 거절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업체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공익침해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Q&A

공익신고자 보상 관련

Q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보상금을 받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파파라치 등이 가벼운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신고하여 영세업자들의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보상금을 주도록 개선되었습니다.

Q

공익신고 이전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구조금은 신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한해 지급됩니다. 다만, 공익신고 이전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유독성 폐수의 심야시간 무단 방출 등 공익침해행위를 알고 있던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공익신고를 하였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손실액 등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익신고 이후 폭행, 협박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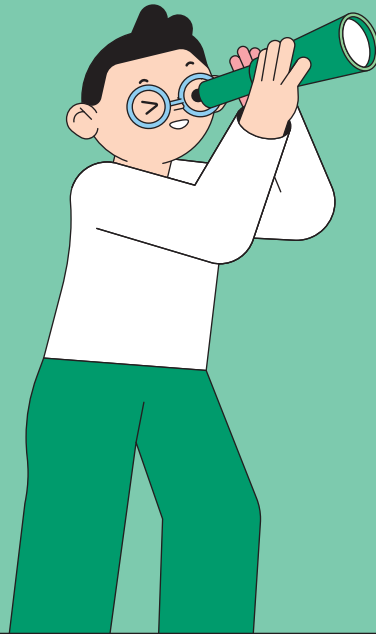
공익신고로 인하여 해고된 이후 실직 기간의 모든 임금손실을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구조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손실액은 최대 36개월 까지만 인정됩니다. 또한, 구조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손실액도 전국규모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의 평균임금 2배를 넘을 수 없으므로 해당 범위 내에서 구조금이 지급됩니다.

IV

유형별 공익제보 대상 행위



01 공익신고 대상

02 부패행위신고 대상

03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신고 대상

01 공익신고 대상

6개 분야 총 24개의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을 참고하세요

	행위 기준	위반 행위(예시)
건강 분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허위표시
	학교급식법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를 사용하는 행위
	의료법, 약사법	무면허의료행위, 불법의료광고,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판매,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
	식품위생법	위해식품의 제조 및 판매, 식품유통기한 변조 및 식품 인증마크 불법사용
안전 분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폭발위험이 있는 가짜 자동차 에어컨 냉매가스를 무허가로 수입·납품하는 행위
	건설기술관리법	불성실한 책임감리 등으로 시설물의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는 행위
	건축사법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시공감리를 하는 행위
	해사안전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는 행위
환경 분야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
	대기환경보전법	유독물을 사용하는 인쇄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약취방지법	약취관리지역에 약취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물환경보전법	유해물질, 농약, 축산폐수 등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소비자 이익 분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유통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소비자기본법	물품·용역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수수,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
공정한 경쟁 분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격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 가격 차별 등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불법 하도급 거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공사를 따내기 위해 미군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채용절차법	사업장을 홍보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방위산업 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행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11가지 행위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를 참고하세요

행위 기준		위반 행위(예시)
1	중·수뢰	•준공 검사 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 •행정처분 대상 업체에 처분 경감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
2	향응수수	•업체의 업무 편의를 봐주고 성접대, 골프 접대를 받은 행위
3	공금 횡령·유용	•업체에 허위로 예산을 지급 후 업체로부터 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세외 수입 등을 횡령하는 행위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이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직권남용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소속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건축허가 통지토록 한 행위 •용역업체에 계약과 무관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직무유기	•불법 용도변경을 단속하면서 지인의 불법 용도변경 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행위
6	비밀누설	•조사·단속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는 자에게 사전에 누설하는 행위
7	문서 위·변조	•승진순위를 조작하여 허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행위
8	예산 및 재정 관련 법령 위반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행위 •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행위 •특정업체의 특정제품을 명시하여 특정업체가 고가로 낙찰되도록 한 행위 •지체상금·이행강제금 미부과 등
9	사기	•인원수를 허위로 늘려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
10	불법적 이익 제안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인 이익을 줄 것을 제안한 경우
11	금품 제공 강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구박하여 그 학부모가 촌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게 강요

총 22가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기준을 참고하세요

행위 기준		위반 행위(예시)
1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납품업체의 부탁을 받고, 부하 검사 공무원에게 하자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합격 처리 지시
2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공무원이 자신의 사촌 동생이 신청한 건축허가를 심의
3	고위공직자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A시장은 지방선거로 공직에 취임하고도, 30일 이내에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서(3년간) 미제출
4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공무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사적으로 자문을 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자문료 수수
5	가족채용 제한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조카가 직원 채용에 합격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 행사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구매계약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전산용품을 구매
7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퇴직 선배가 초대된 골프모임 참석하면서 신고하지 않음
8	특혜 배제	B기관 운영국장이 고교 동창인 교수에게 5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용역 발주
9	예산목적 외 사용 금지	일선 기관 부서장들이 부서운영비를 점심값 등 사적 용도로 사용
10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처리	정치인 등의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고 처리
11	인사청탁금지	C시청 국장이 직원의 부탁을 받고 총무과장에게 직원의 승진을 청탁
12	이권개입금지	D군청 환경관리과장이 친구들의 부탁을 받고 주말에 관내 골프장에 부킹을 하게 해 줌
13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자신과 사적 친분관계자의 출판물에 홍보를 위해 기관 명칭, 직위를 추천서, 인사말 등에 기재
14	알선, 청탁 등의 금지	(사례 1)민간기업에 특정한 채용 및 보직 변경 요구(사례 2)사기업에 특정업체와 계약 체결하도록 요구
15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E시청 도시개발국장이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친인척 명의로 계획구역 내 부동산을 다량 취득한 후 차익 실현
16	공용물의 사적 사용 및 수익금지	업무용으로 배정된 소형트럭을 개인 주말농장에 사용
17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청소업체 관리업무 공무원이 업체 미화원들로부터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 청소 편의를 제공받음
18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갑질행위)	담당공무원이 인·허가 등 신청인 혹은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업무 혹은 업무 관련 비용, 인력을 부당하게 전가
19	금품 등의 수수금지	공무원이 직무 관련업체의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과 회식, 직원 야근 식대 등으로 사용
20	감독기관의 부당요구 금지	해외 연수를 가면서 산하기관에 해당 비용을 대신 내도록 요구하는 행위
21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외부 강의의 시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수령하고 미신고
21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500만원을 무이자로 사전 신고 없이 차용함
22	경조사 통지 제한	F구청 국장의 자녀 결혼 청첩장에 축의금 접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직무관련업체에 FAX로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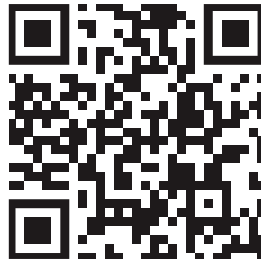
알기 쉬운! 서울시 복지시설 공익제보 매뉴얼

발행일 2025년 7월
발행처 서울시(복지정책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우) 04524
전화 (02)2133-7313
팩스 (02)2133-0718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디자인 STUDIO BITGREEM (070)7717-2352



서울시 응답소(공익신고) QR

"시민 여러분의 공익제보
이제 **핫라인**으로 신원노출 걱정 없이, **간편하게!**"



<https://eungdapso.seoul.go.kr>